

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
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

대한민국 정부(“한국”)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(“베트남”) (이하 총칭하여 “양 당사국”이라 하고, 개별적으로 “당사국”이라 한다.)는,

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,

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,

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,

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,

양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인식하고,

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,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,

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, 투명하며,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,

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,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,

「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」과 기본협정에 따르는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